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2. 10. 7.
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2년 9월 18일

나. 발 의 자: 유승용 의원 외 3명

다. 회부일자: 2022년 9월 22일

라. 상정일자: 제239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

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(2022. 9. 30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유승용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에 따라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,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탄소중립의 총칙 (안 제1조 ~ 제7조)
-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 (안 제8조 ~ 제11조)
-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(안 제12조 ~ 제14조)

-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 (안 제15조 ~ 제19조)
-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(안 제20조 ~ 제22조)
- 기존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」 폐지 (안 부칙 제2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최종란)

○ 본 조례안은

-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이 제정(시행 2022. 3. 25.)됨에 따라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조례명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」이고 총 5장과 22개의 본칙 조문 및 3개의 부칙 조문으로 구성하였고,
-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탄소중립을 위한 구청장, 사업자,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,
-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탄소중립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과 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, 영등포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행정의 일관성과 연계성을 위해 환경정책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여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으며,
- 안 제15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·재생 에너지 전환, 녹색건축물의 활성화, 녹색교통의 활성화, 친환경차 보급 확대, 탄소 흡수원

확대 등 구체적인 제도·시책을 규정하였고,

- 안 제20조부터 안 제22조까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을 위해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·홍보, 탄소중립이행책임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- 안 부칙 제2조에서는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 성장 기본법」이 제정(시행 2022. 3. 25.)됨에 따라 「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」이 폐지되어, 이와 관련된 현행 조례인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」의 폐지를 규정하였음.

○ 본 조례안은

- 가속화되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으로 국제사회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의무이행을 독려하고 있으며, 우리 정부에서도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춰 2020년 10월 ‘2050 탄소중립’을 선언하고, 탄소중립 정책 관련 계획 및 시책을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 9월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을 제정하여 시행(2022. 3. 25.)하고 있으며, “기후위기 대응” 관련 타 자치구 입법 사례를 살펴보면,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7개 자치구가 조례를 제정하였으므로, 본 조례안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,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

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안

(유승용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2
----------	----

발의년월일: 2022년 9월

발의자: 유승용 의원 외 3명

1. 제안이유

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에 따라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대책을 강화하고,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탄소중립의 총칙(안 제1조 ~ 제7조)
- 나. 탄소중립의 이행 목표 및 계획(안 제8조 ~ 제11조)
- 다.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(안 제12조 ~ 제14조)
- 라.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(안 제15조 ~ 제19조)
- 마.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(안 제20조 ~ 제22조)

3. 제정안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
- 나. 예산조치: 필요 시 반영
- 다. 입법예고(2022. 9. 14. ~ 9. 19.): 의견 없음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안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통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기본원칙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.

1.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.
2. 경제·사회·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·시행한다.

3.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기업,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한다.

제4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경제·사회·교육·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구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사업자의 책무) ① 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사업자는 구의 기후위기 대응대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.

제6조(구민의 책무) ① 구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, 구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.

② 국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7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장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

제8조(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) 구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제9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에 포함하여야 한다.

제9조(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서울특별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구의 지역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온실가스 배출·흡수 현황 및 전망
2.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·연도별 이행대책
3. 기후변화의 감시·예측·영향·취약성 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
4.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·홍보에 관

한 사항

5. 녹색기술·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

6.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·변경 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고 한다)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구청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.

제10조(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· 시행 등) ① 구청장은 법 제4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적응대책과 구의 지역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위기 적응대책(이하 “기후위기 적응대책” 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기후위기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기후위기 영향과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

2.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

3.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·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구청장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·변경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구청장은 확정된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공표하여야 한다.

제11조(추진상황 점검)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추진

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.

제3장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

제12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.

1.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
2. 구의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
3. 기본계획의 수립·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
4.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
5.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·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
6. 기후위기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심의 및 위원회의 회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.

제1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호선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
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단,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
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.

1. 탄소중립 정책 관련 국장 및 부서장
2.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
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14조(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
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
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
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의 위원회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·수당
등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.

제4장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

제15조(신·재생에너지 전환)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
신·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도로·교통·항만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·체육관·
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·재생에너
지시설 보급·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.

제16조(녹색건축물의 활성화) 구청장은 에너지이용 효율과 신·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7조(녹색교통의 활성화) ① 사업자 및 구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으며,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또는 「도로교통법」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구민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제18조(친환경차 보급 확대) ① 구청장은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(이하 “친환경차”라 한다)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,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충전기 등 기반시설 보급에 힘써야 한다.

제19조(탄소흡수원 확대)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·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

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

제20조(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·홍보) 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산·소비·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과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(이하 “녹색생활”이라 한다)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·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구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·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.

제21조(국가 등과의 협력) ①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정부기관, 지방자치단체,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,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,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

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,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22조(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)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업무를 총괄하는 국의 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」는 폐지한다.

제3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수립된 기후변화적응대책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.